# 202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

2024. 12. 30.



# 목 차

| ١.  | 202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|
| ΙΙ. | 업종별 신청자격 및 필요서류 등7   |
|     | 1. 종합여행업, 국내외여행업, 국내여행업8   |
|     | 2. 호텔업(관광호텔업, 수상관광호텔업, 한국전통호텔업, 가족호텔업,<br>호스텔업, 소형호텔업, 의료관광호텔업)9 |
|     | 3. 휴양콘도미니엄업11  |
|     | 4. 전문휴양업, 종합휴양업12  |
|     | 5. 야영장업14  |
|     | 6. 관광공연장업16  |
|     | 7. 국제회의시설업 18  |
|     | 8. 국제회의기획업20   |
|     | 9. 외국인환자 유치업 21  |
|     | 10. 카지노업 22  |
|     | 11. 종합유원시설업, 일반유원시설업 23  |
|     | 12. 기타유원시설업25  |
|     | 13. 관광유흥음식점업,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14. 관광식당업27  |
|     | 15. 관광면세업(보세판매장, 사후면세점)29  |
|     | 16. 관광순환버스업31  |
|     | 17. 관광펜션업33  |
|     | 18. 관광궤도업35  |
|     | 19. 한옥체험업37  |
|     | 20. 숙박업(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)39   |

|       | 21.             |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4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|---|
|       | 22.             | 관광사진업42   |
|       | 23.             | 관광유람선업43  |
|       | 24.             | 마리나업(마리나선박 대여업, 마리나선박 보관·계류업)45                 |
|       | 25.             | 호텔리츠47  |
|       | 26.             | 공공법인 등의 관광지·관광단지 조성사업 및 관광특구진흥계획<br>시행사업48      |
|       | 27.             | 관광지, 관광단지, 관광특구내 미술관·박물관 ······49               |
|       | 28.             | 관광지, 관광단지, 관광특구내 공연장50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29.             | 관광지, 관광단지, 관광특구내 주차시설51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30.             | 관광지, 관광단지, 관광특구내 신고 숙박시설 52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31.             | 관광지, 관광단지, 관광특구내 유스호스텔53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32.             |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5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33.             | 자동차대여사업5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34.             | 수상·수중레저사업 ······ 5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35.             | 관광객 유치형 축제·행사 5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36.             | 관광지원서비스업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37.             |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6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 |   |
| III . | 융기              | 다 업무처리 안내 및 융자신청서 63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1               |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 융자취급 안내문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64     |
|       | 2               | 관광기금 융자심사·선정업무 가이드라인66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3. 7            | 금융기관 융자취급 안내문 ······69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4. (            | )<br>기차보전 신청서 ·······73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5. <del>i</del> | 로영자금 소요내역서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|
|       |                 |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······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٠. ١            |   |

| IV. | 학고자료 ······· 8 <sup>-</sup>     | 1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    | l. 관광지, 관광단지, 관광특구 현황 ·······82 | 2 |
|     | 2. 업종별 융자지원현황 8년                | 5 |

# I. 202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

# 202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

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.

2024년 12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

1. 지원규모: 500억원 이내

※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
### 2. 지원방식 : 자금 선정에 의해 대출된 금액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

- ㅇ 관광사업자가 은행자금으로 대출받고.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
- 은행 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,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(부동산, 보증서 등)제공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함

### 3. 지원대상

- ㅇ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등(동 기간 내 관광기금 융자지원과 중복 신청 불가)
  - \* 구체적인 이차보전 지원대상 해당 여부는 '업종별 신청자격(7~62p)'참조

### 4. 신청한도 및 지원조건(대출금리, 대출기간 등)

| 구분     |          | 지원조건   |
|--------|----------|--|
| 신청한도   | 운영자금     | -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%, 30억원 이내 <sup>*</sup> * 기 지원받은 관광기금(융자 및 이차보전) 미상환액 포함  |
|        | 시설자금     | 2025년 상반기 소요자금 100%, 150억원 이내  |
| <br>대추 | ·<br>·금리 | -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 (적용금리 = 은행 대출금리 — 이차보전율)   |
|        | ㅁ니       | * 단,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CD유통수익률(91물) + 5%를 초과할 수 없음   |
| 이차보전율  |          | - 중소기업 3%, 대·중견기업 : 2.5%   |
|        |          | * 대 기 업 :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<br>중견기업 :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상의 중견기업<br>중소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중소기업 |
| 대출기간   |          | 운영자금 3년(만기일시상환), 시설자금 5년(2년 거치 3년 분할상환)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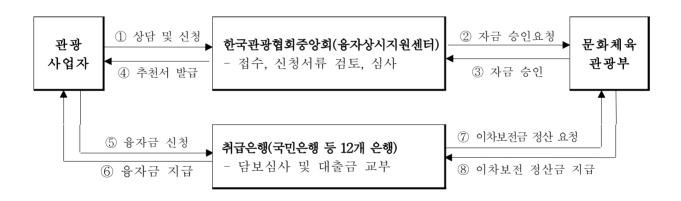
※ 적용조건 : 최초 대출 시 적용된 지원조건은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(중도 변경 불가) 다만, 융자대상업체로 선정된 후 융자 시행 전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중소기업, 중소기업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를 변경 적용

### 5. 시행 일정

| 구분   |        | 일정   |
|------|--------|--|
| 신청서류 | 접수기간   | - 2024. 12. 30.(월) ~ 2025 5. 16.(금)<br>* 신청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,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                 |
| 제출   | 문의·접수처 | - 한국관광협회중앙회(융자상시지원센터 / 🏗 02-757-7485) * 주소 :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,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3층 * 신청서류 제출방법 : 방문 또는 등기우편 |
| 융자금  | 신청기간   | - 융자 선정 <sup>*</sup> 후 즉시 ~ 2025.6.13.(금)<br>* 선정발표는 매월 관광협회중앙회(융자상시지원센터)에서 개별 통보                      |
| 신청   | 신청처    | - 국민은행, 기업은행, 농협은행, 경남은행, 광주은행, 아이엠뱅크,<br>부산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전북은행, 하나은행, 수협은행 중<br>신청서에 기재한 은행 영업점      |

- ☞ 신청서류 접수기간은 사업자가 접수처에 신청하는 날짜 기준임
- ☞ 은행은 융자금 대출실행을 2025.6.27.(금)까지 완료해야 함

### 6. 이자보전지원 흐름도



### 7. 소요자금 신청범위

### 가. 시설자금

- 융자취급은행의 심사를 거친 관광사업체의 공사금액 중 <u>'25년 상반기에 소요되는 공사 및</u>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, 구축물,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
- 기보수자금은 [건축법 시행령] 제2조의 '개축', '재축'에 소요되는 자금으로, 기존 건축물의 규모와 동일하게 보수하는 것에 한하며, 규모가 변동되는 증축, 증설 등은 건설자금으로 신청하여야 함
  - \*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개보수에 해당

- ㅇ 다음의 경우,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
  - '24.7.1일 이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지급 중인 공사비('24년도 하반기 내 준공된 공사 제외)
  -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·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의 토지매입비
  - 공사자금으로 토목공사에 소요되는 자금\*
    - \* 단, 관광시설 확충 등에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서, 그 관광시설이 정상적으로 준공 및 운영되어야 함.
  - 항공기 구입 시 금융리스로 인해 계상된 부채 감소를 위한 목적으로 융자 가능
  - '20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관광시설 건설, 개보수 등 시설자금 지급 용도로 융자받은 시중은행 일반시설자금 융자금 잔액
    - \*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정책자금 제외
  - \*\* 조기상환수수료 발생시 해당금액만큼 추가 신청 가능
  - \*\*\* 건설, 개보수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해당 업종의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, 은행의 기성고조사서류 요약본 사본과 융자받은 일반시설자금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금융거래정보확인서 등) 추가 제출 필요
- ㅇ 다음의 경우.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
  -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9조 제13호, 제19호부터 제23호까지, 제26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, 기타 관광사업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
  - 토지매입비.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·비품 구입비용
- ㅇ 시설자금 실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확정
  - 대출금액 =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(단. 당기 융자배정액 이내)

# 나. 운영자금

-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(매출원가+판매·관리비)에 한함
- ㅇ 다음의 경우.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
  - 자산취득비용 중 집기·비품·차량운반구는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
  - '20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영업비용 목적으로 차입한 시중은행 일반운영자금 융자금 잔액
    - \*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정책자금 제외
  - \*\* 조기상환수수료 발생시 해당금액만큼 추가 신청 가능
  - \*\*\* 시중은행 일반운영자금을 융자받은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해당 업종의 신청자격을

갖추고 있어야 하며, 일반운영자금을 융자받은 당시 회계연도 재무제표와 융자받은 일반운영자금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금융거래정보확인서 등) 추가 제출 필요

- 이자 등 금융비용은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
- 카지노업의 경우 영업장 개보수비, 신기종 구입비, 해외사무소 유지비, 해외 광고홍보비를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

### 8. 유의사항

- 가. 배정(선정)액을 융자금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. 선정 잔액 전액 소멸 및 이월 불가
- 나. 융자신청자는 업종, 용도(건설·개보수·운영), 사업장별로 개별 융자 신청
  - 융자취급은행이 증빙서류, 재무건전성, 사업성, 상환능력, 담보규모 등에 따라
    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,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, 신청 전에
    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
- 다. 융자선정액은 최대 대출가능액이며. 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
- 라. 융자신청자는 직접 융자 신청하여야 하며, 대리 신청 불가
- 마. 관광사업자는 대출받은 기금 사용 용도가 기재된 별도 장부 비치(세부사용명세 보존)
  - 목적 외 사용 예방, 공정관리 등을 위하여 융자취급은행이나 정부 관계기관이관련 증빙서류 열람을 요구할 경우 협조
- 바. 관광사업체 등록 및 신고, 지정, 인증 등을 전제로 융자받은 사업자는 공사 완료(준공승인일 기준)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당업종으로 등록·신고· 지정·인증 등을 필하여야 하며, 등록증, 신고증, 지정증, 인증서 등 인·허가 증빙서류를 융자취급은행에 제출하여야 함
- 사. 관광사업자는 기금을 대출받은 당해연도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(수정 및 경정·정정신고 등 포함) 후 1개월 이내에 융자취급은행에 제출하여야 함
  - \* 단,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(세무신고서류, 세금계산서, 융자금 사용내역이 기재된 장부 등 융자금을 사용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포함)을 1개월 이내 제출
- 아. 융자취급은행을 변경할 경우에는 융자사업자가 신청은행 및 변경할 은행 등과 협의 후, **변경할 은행이 당초 융자취급은행의 동의서 징구 후 융자상시지원센터에**

### 문서로 융자취급은행 변경 요청

- \* 융자 시행 전 은행변경은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가 변경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서로 통보
- 자. 융자금은 사업체가 보유한 자기자금, 예금 등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융자 받으시기 바람. 융자취급은행이 해당 사업체의 금융자산 현황을 파악하여 여유 자금이 있는 경우 융자금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.
- 차. 최적의 사업예산 집행을 위해 예산액을 초과하여 융자사업자를 선정하며, 융자금은 취급은행 차입 신청순으로 시행하므로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음
- 카. <u>저리로 융자받도록 해주겠다며 대행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므로</u>, 융자신청 관련 문의는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(☎ 02-757-7485)를 통해 확인바라며,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컨설팅 등 대행업체 이용에 각별히 주의 바람
- 타. 융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0조의2에 의거 정부의 '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'을 위한 정보활용 동의서 (표준서식)를 제출
- 파. 이 지침은 '25년 상반기 이차보전 지원분에 대해서 적용하며, 이 지침 시행 전에 대출된 융자금은 종전의 이차보전지침 상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

### 9. 융자금의 회수 및 제한

- 가. 다음의 경우 기 대출된 융자금 및 이차보전금을 회수할 수 있음.
- 용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, 융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서류 허위 작성또는 미 작성, 융자금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
- 융자사업자가 공사종료(준공승인일 기준) 후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금신청 업종으로 등록(신고·지정·인증 포함)하지 않거나 융자금 상환완료 전에 폐업 등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
- 폐업 등의 사유로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사업자는 즉시 취급은행에 알려야 함
- \* 단, 문체부의 한국관광 품질인증 중단('23년 이후)에 따라 불가피하게 재인증 받지 못한 기존 융자 시행업체의 경우 기발급 된 인증서를 증빙자료로 인정
- ㅇ 융자신청 시 제출한 회원모집계획을 벗어나는 경우

- 부당영업 등으로 최근 2년간(처분일자 기준) 3회 이상 행정처분(주의 포함)을 받는 경우
- 아 사후 제출서류(결산서, 세무신고서류 등) 상 증빙금액이 부족하거나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
- 당해년도 상·하반기(특별융자를 포함) <u>운영자금으로 융자받은 금액의 총 합계가</u> <u>해당연도 결산서 상 영업비용을 초과하거나, 결산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전액 회수</u> (\* 자산 취득비용 중 운영자금으로 인정된 경비는 제외)
- ※ 위 회수사유의 경중에 따라 융자선정내역을 취소하고, 취소일로부터 최대 3년간 융자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.
- 나. 다음의 경우에는 관광기금 융자금을 신청할 수 없음.
  - 최근 2년이내(처분일자 기준)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및
     「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, 이들
     법률 위반을 이유로 다른 법률 등에 의거 1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

# Ⅱ. 업종별 신청자격 및 필요서류 등

# 1. 종합여행업, 국내외여행업, 국내여행업

# □ 운영자금

# 1. 신청자격

∘ 「관광진흥법」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, 국내여행업을 운영중인 자

- 융자신청서
- 운영자금 소요내역서
-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관광사업등록증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  - \*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

# 2. 호텔업(관광호텔업, 수상관광호텔업, 한국전통호텔업, 가족호텔업, 호스텔업, 소형호텔업, 의료관광호텔업)

# □ 시설자금(건설)

### 1. 신청자격

- ∘ 「관광진흥법」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하고자, 관할 시·군·구청에서 호텔업 사업계획승인과 「건축법」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은 자
- · 증축 및 증설의 경우, 호텔업 외 용도의 건물 등을 상기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호텔업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등을 받은 자

# 2.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, 사업계획승인서 사본, 건축허가서 사본
- 시설자금 소요내역서,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관광사업등록증 사본\*. 등급인정증 사본\*(호스텔업은 제출 불요)
  - \* 호텔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
- 회원모집계획서(회원모집 계획이 있는 경우만 제출)

# 3. 유의사항

- · 공사완료 후 반드시 호텔업으로 등록(시·군·구청)하여야 하며,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대상이 됨
- 호텔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
- 호텔업 등록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았거나, 신청하였음에도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(호스텔업 제외)
- 등급 유효기간 경과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

# □ 시설자금(개보수)

### 1. 신청자격

- ∘「관광진흥법」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 중인 자
  - \* 등급이 없거나 등급 유효기간이 경과한 호텔(관광호텔업, 수상관광호텔업, 한국전통 호텔업, 소형호텔업, 의료관광호텔업, 가족호텔업)은 개보수자금 신청 불가
- 개축 및 재축의 경우, 호텔업 외 용도의 건물 등을 상기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호텔업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등을 받은 자

# 2.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, 사업계획승인서 사본,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
- 시설자금 소요내역서,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관광사업등록증 사본\*. 등급인정증 사본\*(호스텔업은 제출 불요)
  - \* 호텔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

### 3. 유의사항

- ∘ 공사완료 후 반드시 호텔업으로 등록(시·군·구청)하여야 하며,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대상이 됨
- 호텔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
- 호텔업 등록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았거나, 신청하였음에도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(호스텔업 제외)
- 등급 유효기간 경과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

# □ 운영자금

### 1. 신청자격

- ∘ 「관광진흥법」제3조에 의거 호텔업(특급호텔 포함)을 운영 중인 자
- 등급이 없거나 등급 유효기간이 경과한 호텔(관광호텔업, 수상관광호텔업, 한국전통호텔업, 소형호텔업, 의료관광호텔업, 가족호텔업)은 운영자금 신청 불가

- 융자신청서
- 운영자금 소요내역서
-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관광사업등록증 사본
- ∘ 등급인정증 사본(호스텔업은 제출 불요)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  - \*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

# 3. 휴양콘도미니엄업

# □ 시설자금(개보수)

# 1. 신청자격

∘ 「관광진흥법」제3조에 의거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운영 중인 자

# 2.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
- 시설자금 소요내역서,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관광사업등록증 사본
- 사업계획변경승인서 사본(해당 사업자에 한함)
-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(해당 사업자에 한함)

# □ 운영자금

### 1. 신청자격

∘「관광진흥법」제3조에 의거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운영 중인 자

- 융자신청서
- 운영자금 소요내역서
-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관광사업등록증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  - \*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

# 4. 전문휴양업, 종합휴양업

# □ 시설자금(건설)

# 1. 신청자격

- ∘ 「관광진흥법」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운영하고자, 사업계획승인과 「건축법」에 의해 건축허가(시설허가 등)를 받은 자
  - 등록체육시설업이 포함된 경우는 숙박시설이 반드시 관광숙박시설이어야 함

# 2.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, 사업계획승인서 사본, 건축허가서 사본(시설별 허가서 포함)
- 시설자금 소요내역서,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관광사업등록증 사본\*
- \* 휴양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
- 회원모집계획서(해당 사업자에 한함)

### 3. 유의사항

- 공사완료 후 반드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으로 등록(시·군·구청)하여야
- 미등록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
- · 휴양업 중 관광숙박시설(호텔, 휴양콘도미니엄)이 포함된 경우, 해당업종으로 별도 융자신청하여야 함.
- 휴양업 내 개별 업종별로 소요자금 별도 기재
- 등록체육시설업은 시설당 10억원 이내 신청 가능(관광기금 미상환액 포함)

# □ 시설자금(개보수)

### 1. 신청자격

- · 「관광진흥법」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운영중인 자
  - 등록체육시설업이 포함된 경우는 숙박시설이 반드시 관광숙박시설이어야 함

# 2.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, 휴양업 사업계획승인서 사본,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
- 시설자금 소요내역서,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관광사업등록증 사본

### 3. 유의사항

- 휴양업 내 개별 업종별로 소요자금 별도 기재
  - 등록체육시설업은 시설당 10억원 이내 신청 가능(관광기금 미상환액 포함)

# □ 운영자금

# 1. 신청자격

∘ 「관광진흥법」제3조에 의거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을 운영 중인 자

- 융자신청서
- 운영자금 소요내역서
-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관광사업등록증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  - \*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

# 5. 야영장업

# □ 시설자금(건설)

### 1. 신청자격

○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야영장업(일반야영장업, 자동차야영장업) 등록기준을 갖추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

# 2.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, 사업계획서, 개발행위허가서 사본
- 시설자금 소요내역서,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관광사업등록증 사본\*
-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서\*
  - \* 야영장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

# 3. 유의사항

- · 공사완료 후 반드시 야영장업으로 등록(시·군·구청)하여야 함
  - 미등록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

# □ 시설자금(개보수)

### 1. 신청자격

·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야영장업(일반야영장업, 자동차야영장업)을 운영 중인 자

- 융자신청서. 사업계획서
- 시설자금 소요내역서,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관광사업등록증 사본
- 개발행위허가서(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등) 사본 (해당사업자에 한함)
-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서

# □ 운영자금

# 1. 신청자격

。「관광진흥법」제3조에 의거 야영장업을 운영 중인 자

- 융자신청서
- 운영자금 소요내역서
-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관광사업등록증 사본
-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능 증서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  - \*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

# 6. 관광공연장업

# □ 시설자금(건설)

# 1. 신청자격

∘ 「관광진흥법」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공연장업 등록요건을 갖추고,「건축법」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

# 2.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, 사업계획서, 건축허가서 사본
- 시설자금 소요내역서,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관광공연장업 등록증 사본\*
- \* 관광공연장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

# 3. 유의사항

- ·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공연장업으로 등록(시·군·구청)하여야 함
  - 미등록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

# □ 시설자금(개보수)

# 1. 신청자격

∘「관광진흥법」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공연장업을 운영중인 자

- 융자신청서, 관광공연장업 등록증 사본
- 시설자금 소요내역서,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(해당 사업자에 한함)

# □ 운영자금

# 1. 신청자격

∘ 「관광진흥법」제3조에 의거 관광공연장업을 운영 중인 자

- 융자신청서
- 운영자금 소요내역서
-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관광사업등록증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  - \*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

# 7. 국제회의시설업

# □ 시설자금(건설)

# 1. 신청자격

∘ 「관광진흥법」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국제회의시설업을 운영하고자, 사업계획승인과「건축법」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

# 2.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
- 시설자금 소요내역서,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사업계획승인서 사본
- 건축허가서 사본
- 관광사업등록증 사본\*
- \* 국제회의시설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

# 3. 유의사항

- 공사완료 후 반드시 국제회의시설업으로 등록(시·군·구청)하여야 함
- 미등록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

# □ 시설자금(개보수)

### 1. 신청자격

∘ 「관광진흥법」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국제회의시설업을 운영중인 자

- 융자신청서
- 시설자금 소요내역서,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관광사업등록증 사본
- 사업계획승인서 사본,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(해당 사업자에 한함)

# □ 운영자금

# 1. 신청자격

∘ 「관광진흥법」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국제회의시설업을 운영 중인 자

- 융자신청서
- 운영자금 소요내역서
-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관광사업등록증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  - \*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

# 8. 국제회의기획업

# □ 운영자금

# 1. 신청자격

∘ 「관광진흥법」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국제회의기획업을 운영 중인 자

- 융자신청서
- 운영자금 소요내역서
-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관광사업등록증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  - \*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

# 9. 외국인환자 유치업

# □ 운영자금

# 1. 신청자격

∘ 「관광진흥법」제1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로서, 최근 2년이내(\* 융자지침 공고일로부터 역산한다.)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

- 융자신청서
- 운영자금 소요내역서
-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  - \*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
- 최근 2년이내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서(\* 한국보건산업진흥원)
-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 사본(\*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급)

# 10. 카지노업

# □ 운영자금

# 1. 신청자격

∘「관광진흥법」제3조에 의거 카지노업을 운영중인 자

- ∘ 융자신청서
- 운영자금 소요내역서
-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관광사업허가증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
# 11. 종합유원시설업, 일반유원시설업

# □ 시설자금(건설)

### 1. 신청자격

∘ 「관광진흥법」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종합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을 운영하고자,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허가를 받고자 관할관청에서 공작물축조 신고증을 교부받고 유기기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

# 2.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
- 시설자금 소요내역서,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· 공작물축조허가증 사본·유기기기 매매계약서 사본
- 유원시설업허가증 사본\*
- \* 유원시설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

# 3. 유의사항

∘ 공사완료 후 반드시 종합·일반유원시설업으로 허가(시·군·구청)받아야 함 - 미 허가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

# □ 시설자금(개보수)

# 1. 신청자격

·「관광진흥법」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종합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을 운영 중인 자

- 융자신청서
- 시설자금 소요내역서,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유원시설업 허가증 사본

# □ 운영자금

# 1. 신청자격

∘ 「관광진흥법」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종합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을 운영 중인 자

- 융자신청서
- 운영자금 소요내역서
-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유원시설업 허가증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  - \*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

# 12. 기타유원시설업

# □ 운영자금

# 1. 신청자격

∘ 「관광진흥법」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기타유원시설업을 운영 중인 자

- 융자신청서
- 운영자금 소요내역서
-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유원시설업 신고증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  - \*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

# 13. 관광유흥음식점업,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

# □ 시설자금(개보수)

### 1. 신청자격

· 「관광진흥법」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유흥음식점업 또는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운영중인 자

# 2.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,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
- 시설자금 소요내역서,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(해당사업자에 한함)

# □ 운영자금

### 1. 신청자격

· 「관광진흥법」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유흥음식점업 또는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운영중인 자

- 융자신청서
- 운영자금 소요내역서
-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  - \*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

# 14. 관광식당업

# □ 시설자금(건설)

### 1. 신청자격

- ∘ 「관광진흥법」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식당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자로 「건축법」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
  - \* <u>관광식당을 신축·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주용도가 일반</u> 음식점이어야 하며, 건축물의 연면적은 1,000㎡ 이상이어야 함.

# 2.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
- 시설자금 소요내역서
-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착공신고필증 및 건축허가서 사본
-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\*
- \* 관광식당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

# 3. 유의사항

-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식당업으로 지정(지역관광협회)받아야 함
  - 미지정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

# □ 시설자금(개보수)

### 1. 신청자격

- ∘「관광진흥법」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식당업을 운영 중인 자
- 특급호텔(4~5성급) 내 한식당을 위 관광식당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

# 2.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,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
- 시설자금 소요내역서,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(해당사업자에 한함)

# 3. 유의사항

-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식당업으로 지정(지역관광협회)받아야 함
- 미지정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

# □ 운영자금

# 1. 신청자격

∘「관광진흥법」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식당업을 운영 중인 자

- 융자신청서
- 운영자금 소요내역서
-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  - \*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

# 15. 관광면세업(보세판매장, 사후면세점)

# □ 시설자금(증축)

# 1. 신청자격

∘ 「관광진흥법」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면세업(보세판매장)을 운영 중인 자

# 2.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
- 시설자금 소요내역서
-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
-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
- 보세판매장 특허증 사본
- 건축허가서 사본

# 3. 유의사항

- ·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면세업으로 지정(시·군·구청)받아야 함
  - 미 지정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

# □ 시설자금(개보수)

### 1. 신청자격

· 「관광진흥법」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면세업(보세판매장)을 운영 중인 자

# 2.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
- 시설자금 소요내역서
-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
- 보세판매장 특허증 사본
- 사업계획서 사본
-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(해당 사업자에 한함)

# □ 운영자금

### 1. 신청자격

- ∘ 「관광진흥법」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면세업을 운영 중인 자
- ∘ 「관광진흥법」제48조의10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10제7호에 의거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사후면세점을 운영 중인 자

- 융자신청서
- 운영자금 소요내역서
-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또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서 사본
- 보세판매장 특허증 사본 또는 외국인 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증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  - \*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

# 16. 관광순환버스업

# □ 시설자금(증설)

### 1. 신청자격

。「관광진흥법」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순환버스업을 운영중인 자로 버스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

# 2.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
- 시설자금 소요내역서
-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
- 여객자동차운송 면허증 또는 등록증 사본
- 버스 등의 매매계약서 사본

# 3. 유의사항

- ∘ 버스 등 구입 후 반드시 관광순환버스업으로 지정(시·군·구청)받아야 함
- 미 지정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
-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

# □ 시설자금(개보수)

# 1. 신청자격

∘ 「관광진흥법」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순환버스업을 운영중인 자

#### 2.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
- 시설자금 소요내역서
-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
- 여객자동차운송 면허증 또는 등록증 사본

### □ 운영자금

#### 1. 신청자격

∘ 「관광진흥법」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순환버스업을 운영중인 자

- 융자신청서
- 운영자금 소요내역서
-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  - \*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

# 17. 관광펜션업

### □ 시설자금(건설)

#### 1. 신청자격

∘「관광진흥법」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, 「건축법」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

#### 2.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
- 시설자금 소요내역서
-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사업계획서, 건축허가서 사본
-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\*
- \*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

#### 3. 유의사항

- 신청 전에 해당 건축허가서를 시·구·군청 관광과에 제시하여 관광펜션 지정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람
  - \*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[2]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참조
- ∘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펜션업(시·군·구청)으로 지정받아야 함.
- 미 지정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
- · 「농어촌정비법」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후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는 경우 신청한도 10억원 이내

# □ 시설자금(개보수)

#### 1. 신청자격

∘ 「관광진흥법」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펜션업을 운영 중인 자

#### 2.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,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
- 시설자금 소요내역서
-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사업계획서
-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(해당 사업자에 한함)

#### 3. 유의사항

。「농어촌정비법」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후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신청한도 5억원 이내

# □ 운영자금

#### 1. 신청자격

∘ 「관광진흥법」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펜션업을 운영 중인 자

- 융자신청서
- 운영자금 소요내역서
-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  - \*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

# 18. 관광궤도업

### □ 시설자금(증축 및 증설)

#### 1. 신청자격

∘「관광진흥법」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궤도업을 운영 중인 자

#### 2.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
- 시설자금 소요내역서,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및 시설허가증 사본
- 시설 매매(축조)계약서 사본

#### 3. 유의사항

- ·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궤도업으로 지정(시·군·구청)받아야 함
- 미 지정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
- 증축 및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

# □ 시설자금(개보수)

#### 1. 신청자격

∘「관광진흥법」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궤도업을 운영 중인 자

- 융자신청서
- 시설자금 소요내역서,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및 시설허가증 사본

#### 1. 신청자격

∘ 「관광진흥법」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궤도업을 운영 중인 자

- 융자신청서
- 운영자금 소요내역서
-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  - \*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

# 19. 한옥체험업

# □ 시설자금(증축 및 증설)

#### 1. 신청자격

∘ 「관광진흥법」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한옥체험업을 운영 중인 자

#### 2.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
- 시설자금 소요내역서,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또는 관광사업등록증 사본
-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(해당 사업자에 한함)

#### 3. 유의사항

- · 공사완료 후 반드시 한옥체험업으로 등록(시·군·구청)하여야 함
- 미 등록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
- 증축 및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

# □ 시설자금(개보수)

#### 1. 신청자격

∘「관광진흥법」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한옥체험업을 운영 중인 자

- 융자신청서
- 시설자금 소요내역서,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또는 관광사업등록증 사본
-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(해당 사업자에 한함)

#### 1. 신청자격

∘ 「관광진흥법」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한옥체험업을 운영 중인 자

- 융자신청서
- 운영자금 소요내역서
-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또는 관광사업등록증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
# 20. 숙박업(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)

### □ 시설자금(증축 및 증설)

#### 1. 신청자격

∘ 「관광진흥법」제48조의10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10제6호에 의거 한국관광 품질인증(숙박업)을 받은 자

#### 2.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, 한국관광 품질인증서 사본
- 시설자금 소요내역서,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사업계획서,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(해당 사업자에 한함)

#### 3. 유의사항

- 공사완료 후 반드시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아야 함
- 미 인증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
- 증축 및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

# □ 시설자금(개보수)

#### 1. 신청자격

∘ 「관광진흥법」제48조의10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10제6호에 의거 한국관광 품질인증(숙박업)을 받은 자

- 융자신청서, 한국관광 품질인증서 사본
- 시설자금 소요내역서,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(해당사업자에 한함)

#### 1. 신청자격

∘ 「관광진흥법」제48조의10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10제6호에 의거 한국관광 품질인증(숙박업)을 받은 자

- 융자신청서
- 운영자금 소요내역서
-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한국관광 품질인증서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  - \*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

# 21.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

# □ 운영자금

#### 1. 신청자격

·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운영 중인 자

- 융자신청서
- 운영자금 소요내역서
-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관광사업등록증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  - \*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

# 22. 관광사진업

# □ 운영자금

#### 1. 신청자격

∘ 「관광진흥법」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사진업을 운영 중인 자

- 융자신청서
- 운영자금 소요내역서
-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  - \*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

# 23. 관광유람선업

# □ 시설자금(구입)

#### 1. 신청자격

∘ 「관광진흥법」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유람선업을 운영하고자,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선박 매매(건조)계약을 체결한 자

#### 2.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, 사업계획승인서 사본, 선박 매매(건조)계약서 사본
- 시설자금 소요내역서,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관광사업등록증 사본\*
- \* 관광유람선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

#### 3. 유의사항

- ∘ 매매(건조) 후 반드시 관광유람선업으로 등록(시·군·구청)하여야 함
- 미등록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

# □ 시설자금(개보수)

#### 1. 신청자격

∘ 「관광진흥법」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유람선업을 운영중인 자

- 융자신청서, 관광사업등록증 사본
- 시설자금 소요내역서,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사업계획승인서 사본(해당 사업자에 한함)

#### 1. 신청자격

∘ 「관광진흥법」제3조에 의거 관광유람선업을 운영 중인 자

- 융자신청서
- 운영자금 소요내역서
-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관광사업등록증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  - \*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

# 24. 마리나선박 대여업, 마리나선박 보관 · 계류업

# □ 시설자금(증축 및 증설, 구입)

#### 1. 신청자격

∘ 「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제2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의거 마리나선박 대여업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·계류업을 운영 중인 자

#### 2.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, 사업자등록증
- 시설자금 소요내역서,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·계류업 등록증
- 선박 매매(건조)계약서 사본

#### 3. 유의사항

∘ 증축 및 증설, 구입에 한하여 자금 지원

# □ 시설자금(개보수)

#### 1. 신청자격

∘ 「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제2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의거 마리나선박 대여업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·계류업을 운영 중인 자

- 융자신청서
- 시설자금 소요내역서,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·계류업 등록증

#### 1. 신청자격

∘ 「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제2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2 조의2에 의거 마리나선박 대여업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·계류업을 운영 중인 자

- 융자신청서
- 운영자금 소요내역서
-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 사본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·계류업 등록증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  - \*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

# 25. 호텔리츠

### □ 시설자금

#### 1. 신청자격

-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에 투자하려는 자로서,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
-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기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 일 것
- 해당 융자신청 기간 내 호텔 투자계획이 있을 것
- 호텔운영사와 10년 이상 호텔업 위탁경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
- 업력 10년 이상인 호텔운영사 또는 관광사업자의 지분참여가 10% 이상일 것 ※ 호텔리츠 당 반기별 1회에 한해 융자를 신청할 수 있음

- 융자신청서
-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해당 반기내 호텔투자계획 확인을 위한 집합투자기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등록 또는 인가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
- 해당 융자신청 기간 내 호텔 투자계약서 사본
- 10년 이상 호텔업 위탁경영 계약서 사본
- 업력 10년 이상인 호텔운영사 또는 관광사업의 지분참여가 10% 이상임을증명하는 서류 사본

# 26. 공공법인 등의 관광지·관광단지 조성사업 및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

# □ 시설자금(건설)

#### 1. 신청자격

•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이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(관광진흥법 제54조)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(동법 제71조)을 시행하고자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

#### 2.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
- 시설자금 소요내역서,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· 관광지·관광단지 조성계획승인서 사본,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승인서 사본
- 자금소요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

#### 3. 유의사항

• 토지매입비 신청 가능

# □ 시설자금(개보수)

#### 1. 신청자격

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이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(관광진흥법 제54조)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(동법 제71조)을 시행하고자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

- 융자신청서
- 시설자금 소요내역서,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관광지·관광단지 조성계획승인서 사본,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승인서 사본
- 자금소요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

# 27. 관광지, 관광단지, 관광특구내 미술관·박물관

### □ 시설자금(증축 및 증설)

#### 1. 신청자격

- ∘ 「관광진흥법」에 의한 관광지,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, 「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」에 의거 미술관·박물관을 운영 중인 자로「건축법」에 의한 건축 허가를 받은 자
  - -「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」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

#### 2. 신청서류

- · 융자신청서, 박물관·미술관 등록증 사본
- 시설자금 소요내역서,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(해당 사업자에 한함)

#### 3. 유의사항

- 증축 및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
- 관광지, 관광단지, 관광특구는 관할 시·군·구청(관광과)에서 확인 가능

# □ 시설자금(개보수)

#### 1. 신청자격

- ∘ 「관광진흥법」에 의한 관광지,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, 「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」에 의거 박물관·미술관을 운영중인 자
  - 「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」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

#### 2. 신청서류

- ∘ 융자신청서, 박물관·미술관 등록증 사본, 사업계획서
- 시설자금 소요내역서,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(해당 사업자에 한함)

#### 3. 유의사항

# 28. 관광지, 관광단지, 관광특구내 공연장

### □ 시설자금(증축 및 증설)

#### 1. 신청자격

- ∘ 「관광진흥법」에 의한 관광지,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, 「공연법」에 의거 공연장을 운영 중인 자로 「건축법」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
  - 「공연법」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

#### 2.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, 공연장 등록증 사본, 사업계획서
- 시설자금 소요내역서,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(해당 사업자에 한함)

#### 3. 유의사항

- 증축 및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
- 관광지, 관광단지, 관광특구는 관할 시·군·구청(관광과)에서 확인 가능

# □ 시설자금(개보수)

#### 1. 신청자격

- ∘ 「관광진흥법」에 의한 관광지,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, 「공연법」에 의거 공연장을 운영 중인 자
  - 「공연법」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

#### 2.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, 공연장 등록증 사본, 사업계획서
- 시설자금 소요내역서,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(해당 사업자에 한함)

#### 3. 유의사항

# 29. 관광지, 관광단지, 관광특구내 주차시설

### □ 시설자금(증축 및 증설)

#### 1. 신청자격

- ∘ 「관광진흥법」에 의한 관광지,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, 주차장 관련 법령에 따라 주차시설을 운영 중인 자로 「건축법」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
  - 「주차장법시행령」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

#### 2.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, 사업계획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시설자금 소요내역서,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(해당 사업자에 한함)

#### 3. 유의사항

- 증축 및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
- 관광지, 관광단지, 관광특구는 관할 시·군·구청(관광과)에서 확인 가능

# □ 시설자금(개보수)

#### 1. 신청자격

- ∘ 「관광진흥법」에 의한 관광지,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, 주차장 관련 법령에 따라 주차시설을 운영 중인 자
- 「주차장법시행령」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

#### 2.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사업계획서
- 시설자금 소요내역서,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(해당사업자에 한함)

#### 3. 유의사항

# 30. 관광지, 관광단지, 관광특구내 신고 숙박시설

# □ 시설자금(증축 및 증설)

#### 1. 신청자격

∘ 「관광진흥법」에 의한 관광지,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,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의해 신고하는 숙박업을 운영 중인 자로 「건축법」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

#### 2.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, 숙박업 신고증 사본
- 시설자금 소요내역서,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사업계획서,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(해당사업자에 한함)

#### 3. 유의사항

- 증축 및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
- 관광지, 관광단지, 관광특구는 관할 시·군·구청(관광과)에서 확인 가능

# □ 시설자금(개보수)

#### 1. 신청자격

∘ 「관광진흥법」에 의한 관광지,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, 「공중위생 관리법」에 의해 신고하는 숙박업을 운영 중인 자

#### 2.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, 숙박업 신고증 사본
- 시설자금 소요내역서,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사업계획서,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(해당 사업자에 한함)

#### 3. 유의사항

# 31. 관광지, 관광단지, 관광특구내 유스호스텔

### □ 시설자금(증축 및 증설)

#### 1. 신청자격

∘ 「관광진흥법」에 의한 관광지,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,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에 의한 유스호스텔을 운영 중인 자로 「건축법」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

#### 2.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,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사본
- 시설자금 소요내역서,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사업계획서,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(해당 사업자에 한함)

#### 3. 유의사항

- 증축 및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
- 관광지, 관광단지, 관광특구는 관할 시·군·구청(관광과)에서 확인 가능

# □ 시설자금(개보수)

#### 1 시청자격

∘ 「관광진흥법」에 의한 관광지,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,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에 의한 유스호스텔을 운영 중인 자

#### 2.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,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사본
- 시설자금 소요내역서,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사업설명서(사업목적, 보강 및 보수계획, 소요자금 등을 기재)
-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(해당 사업자에 한함)

#### 3. 유의사항

# 32.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

### □ 시설자금(증축 및 증설)

#### 1. 신청자격

· 「관광진흥법」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을 운영 중인 자

#### 2.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,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
- 시설자금 소요내역서,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(해당 사업자에 한함)

#### 3. 유의사항

· 지정 시설의 증축·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

# □ 시설자금(개보수)

#### 1. 신청자격

∘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을 운영 중인 자

- 융자신청서,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
- 시설자금 소요내역서,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(해당 사업자에 한함)

#### 1. 신청자격

∘ 「관광진흥법」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을 운영 중인 자

- 융자신청서
- 운영자금 소요내역서
-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  - \*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

# 33. 자동차대여사업

# □ 시설자금(구입)

#### 1. 신청자격

∘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제28조에 의거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 중인 자로서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캠핑용 자동차 또는 캠핑용 트레일러를 구입 하고자 하는 자

#### 2.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
- 시설자금 소요내역서,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
- 캠핑카 등 매매계약서 사본

#### 3. 유의사항

- 야영객에게 직접 대여할 목적으로 캠핑카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며, 야영장업체에 대여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함
- 관광기금을 융자하여 구입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융자기간 내 감차, 대폐차, 양도하는 경우, 융자를 취소하고 지원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

# 34. 수상 · 수중레저사업

### □ 시설자금(구입)

#### 1. 신청자격

- ∘「수상레저안전법」제39조에 의거 수상레저사업을 운영 중인 자
- · 「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」제15조에 의거 수중레저사업을 운영 중인 자

#### 2.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
- 시설자금 소요내역서,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수상레저사업 또는 수중레저사업 등록증
- 수상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기구 및 장비 매매계약서 사본

#### 3. 유의사항

• 수상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기구 및 장비 구입자금에 한함

# □ 시설자금(개보수)

#### 1. 신청자격

- ∘「수상레저안전법」제39조에 의거 수상레저사업을 운영 중인 자
- · 「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」제15조에 의거 수중레저사업을 운영 중인 자

#### 2.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
- 시설자금 소요내역서,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수상레저사업 또는 수중레저사업 등록증

#### 3. 유의사항

• 수상레저사업 또는 수중레저사업 관련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에 한함

#### 1. 신청자격

- ∘「수상레저안전법」제39조에 의거 수상레저사업을 운영 중인 자
- ∘ 「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」제15조에 의거 수중레저사업을 운영 중인 자

- 융자신청서
- 운영자금 소요내역서
-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수상레저사업 또는 수중레저사업 등록증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  - \*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

# 35. 관광객 유치형 축제·행사

#### □ 운영자금

#### 1. 신청자격

- ° 민간주관의 2일 이상 개최하는 축제·행사로써 관광객 유치에 기여한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자체의 후원을 받은 자
- ※ 지방자치단체 주관 축제 및 주민행사,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축제, 보조비를 지급받은 축제 등은 제외됨
-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국제회의\*로써 국내 국제회의기획업(PCO)의 행사진행 참여가 있고, 관광객 유치에 기여한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자체 및 관련 단체 (한국관광공사 등)으로부터 후원을 받은 자
  - \* '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'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거나, 국제기구(UIA, ICCA) 기준에 부합하는 국제회의

- 융자신청서
- 운영자금 소요내역서
-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· 축제 · 행사계획서
  - ※ 국제회의의 경우, 국제회의 기준 충족 여부, 행사진행에 참여하는 국내 국제 회의기획업(PCO) 관련 정보, 3년간 국제회의 개최실적 등을 포함하여 작성
- 해당 지방자치단체 후원서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  - \*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

# 36. 관광지원서비스업

# □ 시설자금(증축 및 증설, 구입)

#### 1. 신청자격

· 「관광진흥법」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운영 중인 자

#### 2.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
- 시설자금 소요내역서
-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

#### 3. 유의사항

- 증축 및 증설, 구입에 한하여 자금 지원
- 항공기 구매자금의 경우 지방공항 취항 저비용 항공사에 한하여 신청 가능
- \* 항공기 매매계약서 사본 필요

#### 1. 신청자격

∘ 「관광진흥법」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운영 중인 자

- 융자신청서
- 운영자금 소요내역서
-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  - \*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

# 37.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

### □ 운영자금

#### 1. 신청자격

• 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운영 중인 자

- 융자신청서
- 운영자금 소요내역서
-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 사본
- 외국인환자 우수 유치 의료기관 평가(KAHF) 획득기관 지정서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
# Ⅲ. 융자업무처리 안내 및 융자신청서

# ▶ 1.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 융자취급 안내문

#### 1. 서류심사

#### □ 융자선정위원회 구성

- 변호사, 회계사, 금융 및 관광관련 학계 및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
- ※ 붙임. '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·선정업무 가이드라인'참조

#### □ 융자신청 서류 접수 및 심사 선정

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는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융자선정위원회 개최 및 심사·선정이 종료된 때에는 업체별 융자신청서 사본, 선정총괄표, 회의록 또는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문체부에 제출하여야 하며, 신청서류 원본은 융자상시지원센터가 관리

#### <※ 유의 사항>

- 융자선정위원회는 신청서 사본, 선정총괄표, 회의록 또는 의견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를 경유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. 단. 선정총괄표에는 미 선정된 업체는 미 선정 사유를 반드시 표기할 것
- 융자선정위원회는 업종별 상·하한선의 설정, 업종별 배정액의 조정, 특별 가감 항목의 설정, 업체별 차등 배분을 한 경우에는 그 근거와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 하여야 함
  - \* 특히, 업체별 자금소요계획 및 담보계획이 불명확한 경우 감액 가능

#### 2. 업무안내

• 융자금의 세부사용 내용을 별도 장부에 기록·보존하도록 안내

### 3. 사후관리

- 융자사업체가 이전 및 폐업 시 문체부에 통지(융자금 회수 대상 심사 및 조치)
- 융자사업자가 융자 시행 전 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거래은행 변경을 요청한 경우,
  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가 이를 검토 후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서로 변경내용을
   통보하여야 함

### <붙임1>

# 관광기금 이차보전 월별 자금 승인 신청서(\* 융자상시지원센터 양식)

(단위: 백만원)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업               | 업종      | 소<br>재<br>지 | 은 행 명/<br>지 점 | 융자한도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융자  | 신청 :   | 계획        | ( )    |                | L (1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|
| 구<br>분<br>(자<br>금/<br>구<br>모) | 체 명 /대 표 /연 락 처 |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총<br>소<br>요<br>자<br>금 | 업 체 신 청 액 | 미<br>상<br>환<br>액 | 신 청 한 도 액 | 배 정 신 청 핵      | 1<br>월 | 2<br>월 | 3 월 | 4<br>월 | 5<br>월    | 6<br>월 | 계              | 비 고   |
| 합계: 총 건 백명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| 백만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  |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□ 심사완료: 건       |         | 백만원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  |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|
| 건<br>설<br>/중<br>소             | 00              | 호<br>텔  | 00          | 00            | 3,5<br>00             | 140       | 20               | 130       | 71.<br>4       | 10     | 20     | 20  | 10     | 10        | 1.4    | 71.<br>4       |       |
| 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  |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|
| 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  |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|
| □ 심사 중: 건 백만원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  |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|
| 개<br>보<br>수<br>/중<br>견        | Δ               | 종 합 하 양 | Δ           | △<br>△        | 2,5<br>00             | 80        | 10               | 40        | 14.<br>02<br>5 | -      | -      | 10  | -      | 4.0<br>25 | -      | 14.<br>02<br>5 |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  |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|

#### <붙임2>

# 관광기금 이차보전 월별 자금 승인서(\* 문체부 양식)

(단위: 백만원)

|                 | 업  |   |     |    | 융자한도 |     |    |     |     | 융자신청 계획 |    |    |    |    |     |     |   |
|-----------------|----|---|-----|----|------|-----|----|-----|-----|---------|----|----|----|----|-----|-----|---|
|                 | Ħ  |   |     |    | 평사안도 |     |    |     |     | 향사건성 계획 |    |    |    |    |     |     |   |
| 구               | 체  |   |     |    |      |     |    |     | _   |         |    |    |    |    |     |     |   |
| 분               | 명  |   |     | 은  | 총    |     |    | 신   | 배   |         |    |    |    |    |     |     |   |
|                 |    |   | 소   | 행  |      |     | ㅁ] |     | 정   |         |    |    |    |    |     |     |   |
| (자              | /대 | 업 | 재   | 명/ | 소    | 신   | 상  | 청   | 확   | 1 1     | 2  | 3  | 4  | 5  | 6   |     | 비 |
| 금/              | 丑  | 종 | · · | l  | 요    | 청   |    | 한   |     | 1       | _  | _  |    |    |     | 계   | 고 |
| 규               | /연 |   | 지   | 지  | 자    | 액   | 환  | 도   | 정   | 월       | 월  | 월  | 월  | 월  | 월   |     |   |
|                 |    |   |     | 점  |      | '   | 액  |     | 액   |         |    |    |    |    |     |     |   |
| 모)              | 락  |   |     |    | 금    |     | ·  | 액   | '   | ĺ       |    |    |    |    |     |     |   |
|                 | 처  |   |     |    |      |     |    |     |     |         |    |    |    |    |     |     |   |
| □ 심사완료: 총 건 백만원 |    |   |     |    |      |     |    |     |     |         |    |    |    |    |     |     |   |
| 건               |    |   |     |    |      |     |    |     |     |         |    |    |    |    |     |     |   |
| 설               |    | 호 |     |    | 3,5  |     |    |     | 71. |         |    |    |    |    |     | 71. |   |
|                 | 00 |   | 00  | 00 |      | 140 | 20 | 130 |     | 10      | 20 | 20 | 10 | 10 | 1.4 |     |   |
| /중              |    | 텔 |     |    | 00   |     |    |     | 4   |         |    |    |    |    |     | 4   |   |
| 소               |    |   |     |    |      |     |    |     |     |         |    |    |    |    |     |     |   |
|                 |    |   |     |    |      |     |    |     |     |         |    |    |    |    |     |     |   |

# ▶ 2.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심사·선정업무 가이드라인

#### 제1절 총칙

- 제1조 (목적) 이 가이드라인은 관광기금 운영자금 융자대상 업체를 심사·선정하는데 있어서 한국관광협회중앙회(이하 '중앙회')가 준수해야 될 사항과 융자심사·선정 업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융자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, 전문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 (융자심사·선정의 원칙) ① 융자심사·선정 업무는 객관적인 심사·선정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, 공정성 및 투명성, 형평성이 확보되어야 한다.
  - ② 중앙회의 융자심사·선정 업무 담당자는 제1항에 의해 융자심사·선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#### 제2절 융자상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

- **제3조 (융자상시지원센터 설치)** ① 중앙회에 상설기구로 융자상시지원센터(이하'지원센터)를 설치, 운영한다.
  - ② 지원센터는 중앙회 내부직원으로 구성, 운영한다.
  - ③ 지원센터의 장은 중앙회에서 지정하는 자(국장급 이상 직원)로 한다. 지원센터 장은 지원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.
  - 1. 지원센터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센터 장이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**제4조 (융자상시지원센터의 역할 및 의무)** ① 지원센터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.
  - 1. 융자선정위원회 운영
  - 2. 융자제도 안내 및 홍보(시설 및 운영자금) 지원
  - 3. 시설 및 운영자금 융자 신청서 접수
  - 4. 특별융자 홍보
  - ② 지원센터는 융자지원 업무의 주요한 사항을 문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### 제3절 융자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

- **제5조 (융자선정위원회의 설치)** ① 융자상시지원센터(이하'지원센터')에 비상설기구로 융자선정위원회(이하'위원회')를 설치, 운영한다.
  - ② 지원센터는 변호사, 회계사, 금융 및 관광관련 학계 및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력후보군 20명 이상을 구성, 운영한다.
  - 1. 각 분야 전문가에 대한 조건으로는 해당 분야 내 경력 10년 이상 혹은 관련 자격 증 보유 및 경력 10년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직책을 가진 자로 한다.
  -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력후보군 내 각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 각 1명씩을 지원센터가 선정하여 관리한다.
  -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며, 위원 중의 1인은 중앙회에서 지정하는 자(국장급이상 직원)를 간사로 둔다.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- 제6조 (임기)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문체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까지로 한다.
- **제7조 (회의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지원센터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5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- 1. 위원회의 경우는 반기별 1회는 참석위원을 10명으로하고 나머지는 5인으로 한다.
  - 2.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개최할 수 있다.
  - ② 위원회는 문체부가 정한 이 가이드 라인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, 융자대상자를 심사·선정한다.
- 제8조 (수당) 위원회의 위원 중 중앙회의 직원이 아닌 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한다.

#### 제4절 융자심사·선정 기준

- 제9조 (심사·선정기준의 마련) 융자선정위원회는 각 업체의 재무제표, 융자집행 실적, 업종별 매출규모, 기타 심사·선정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발굴, 활용하여야 한다.
- 제10조 (업종별 상·하한선의 설정) ① 위원회는 소규모 신청업체, 매출액, 영업비용 등 기존 자료가 없는 신규 업체 등에 대해 업종별로 1개 업체당 융자 배정액의 하한선을 설정하여야 한다.

- ② 위원회는 대규모 신청업체에 대한 과다 배정, 신청액 초과 배정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업종별로 1개 업체당 상한선을 설정하여야 한다.
- ③ 위원회는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슈 등으로 특정 업종, 특정 업체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, 이에 대한 배분 기준을 마련할 수가 있다. 이 경우반드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- 제11조 (업종별 배정액의 조정) 위원회는 업종별 신청규모, 배정 한도, 신청 대비 선정 비율, 기타 업종별 이슈 등을 감안하여 전체 배정액의 범위 내에서 업종별 배정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각 업종별 평균적인 융자지원 비율의 차이가 축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2조 (특별 가감 항목의 설정) 위원회는 심사기준에 사회·경제적 긴급한 상황, 사회적 이슈 등을 반영하여 특정 업종 및 특정업체 등에 대해 특별 가감 항목을 설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- 제13조 (업체별 차등배분) ① 위원회는 동일 업종내의 모든 업체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배정하여야 하며, 특정 업체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차등배분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근거와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  - ② 위원회는 융자 신청업체가 미 선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그 미 선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- **제14조 (제한 사항)** 융자선정위회의 위원이 소속된 업체는 융자대상자로 선정될 수가 없다.
- 제15조 (행정사항) 위원회는 융자선정이 종료된 때에는 업체별 융자신청서 사본, 선 정총괄표, 회의록 또는 의견서, 소위원회별 활동내역 및 의견서 등 관련자료를 첨 부하여 중앙회를 경유하여 문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6조 (사후관리) 위원회의 간사는 한국산업은행, 문체부의 협조를 받아 업체별 융자신청액, 선정액, 집행액, 미상환액 등 융자 진행상황 및 관련 데이터를 수집·관리하고, 다음 반기의 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가이드라인은 중앙회 등에 통보된 때로부터 시행한다.

### ▶ 3. 금융기관 이차보전 취급 안내문

#### 1. 업무안내

- 정확한 융자 안내 및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 사업체 편의 제공
- 용자취급은행은 융자시행 전에 해당 사업체의 금융기관 예금 현황과 자기자금 사정을 파악하여, 예금이 많거나 여유자금이 있는 사업체에 대한 융자를 제한 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운 사업체가 융자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, 또한 융자금과 관련하여 '은행법'이 정한 "구속행위"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.
-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해 최소단위 도입

| 구분       | 최소단위 | มอ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<br>융자신청 | 백만원  | 융자선정 최소단위 준용         |
| 기한전 상환   | 백만원  | 백만원 이상부터는 만원단위 적용 가능 |

- 아래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명시하여 준수하도록 관리 철저
  -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1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규정에 의한 기금 융자 시 지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못하며,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 신청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융자금을 회수함
  - 융자사업자는 기금을 대출받은 당해연도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(수정 및 경정·정정신고 등 포함) 후 1개월 이내에 융자취급은행에 제출하여야 함
    - \* 단, 결산서 작성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(세무신고 서류,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포함)을 1개월 이내 제출
  - 융자금 사용자는 융자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,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여 융자금 사용내역을 기록
  - 기타 : 융자취급은행이 협조 요청한 내용
- 융자취급은행은 융자금 수혜자로부터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0조의2에 의거 정부의 '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・운영'을 위한 정보활용 동의서(정보제공 동의 표준서식)를 제출받아 그 사본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시기 바람.

### 2. 사후관리

• 월별 융자현황(매월 익월 15일 이내) 등 융자집행현황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

- 용자금 용자신청 및 원리금 상환 시 마다 사업장 관련 변경사항(사업자등록번호, 주소, 전화, 대표 성명 등)과 관광사업 등록(신고, 지정, 인증)여부를 확인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
- 용자취급은행은 다음의 경우에 융자금의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융자금의 상환기간에도 불구하고 기 대출된 융자금을 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융자취급은행에 상환 명령하고, 상환명령 후 2개월이 경과되도록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보전 지원을 중단 조치함
  -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, 융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 작성, 융자금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
  - 융자사업자가 공사종료(준공승인일 기준) 후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금신청 업종으로 등록(신고·지정·인증 포함)하지 않거나 융자금 상환완료 전에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
  - 융자신청 시 제출한 회원모집계획을 벗어나는 경우
  - 부당영업 등으로 최근 2년간(처분일자 기준) 3회 이상 행정처분(주의 포함)을 받는 경우
    - \*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융자받은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자료 제공
  - 사후 제출서류(결산서, 세무신고서류 등) 상 증빙금액이 부족하거나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
  - 당해년도 상·하반기(특별융자를 포함) 운영자금으로 융자받은 금액의 총 합계가 해당연도 결산서 상 영업비용을 초과하거나, 결산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전액 회수 (\* 자산 취득비용 중 운영자금으로 인정된 경비는 제외)
- 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,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후 관리계획과 함께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
  - 기성검사를 할 때 장부, 세금계산서, 계약서, 입금증 등 증빙서와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정하며, 기성검사에서 의심되는 사항은 명확한 증빙을 요구하고,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성에서 제외하여야 함
  - 관련기관의 조사에서 허위 증빙으로 판명되는 경우 융자가 취소될 수 있음을 사업자에게 설명하고 불명확한 사항은 제외하여야 함
  - 미지급 공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융자취급은행이 송금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람

- ∘ 융자취급은행은 시설자금의 실 대출금액 집행 시 기성고 검사 확인 후, 그 결과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람
- 지방자치단체 또는「관광진흥법」제54조에 의한 공공법인의 토지매입비는 융자 선정액의 60% 이내에서만 집행
- 용자업무와 관련한 민원사항을 문서로 처리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그내용을 통지해주시기 바람
-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 시, 기성검사 등 현장 확인에 대하여 협의, 합동 점검하시기 바람
- 시설·설비 완공 후 당초 계획된 사업으로 등록·신고·지정·인증 등을 하지 않을 시 대출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함
- 거래은행의 변경은 융자사업자가 현 거래은행 및 변경할 은행 등과 협의 후,
   변경할 은행이 당초 거래은행의 동의서 징구 후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에
   문서로 융자취급은행 변경 요청
  - 월별 융자현황에 융자취급은행 변경내용 표기
  - \* 융자 시행 전 은행변경은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가 변경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서로 통보
- 당해 융자금을 예금담보로 설정할 수 없음
  - 은행은 기금 사용자에게 기금융자에 관계된 절차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부담도 부과하여서는 아니됨

##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(표준서식)

| <ul><li>□ 목적</li><li>○ 중소기업 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</li></ul>  |
|---|
| <ul> <li>□ 수집·조회 및 활용 정보</li> <li>○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, 매출액, 납입자본금, 자산총액,<br/>부채총액, 영업이익, 당기순이익, 개업일·휴업일·폐업일, 근로소득 간이세액 인원</li> </ul>   |
| □ 수집·조회 및 활용 기관 ○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(집행기관 포함),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|
| <ul> <li>□ 동의 효력기간</li> <li>○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</li> <li>*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·이용</li> <li>○ 기업정보 수집 시점 :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</li> <li>*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</li> </ul> |
| ※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,<br>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<br>알려 드립니다.  |
|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<br>수집·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  |
| 20 년 월 일<br>기업명 ㅇㅇㅇ<br>대표자 ㅇㅇㅇ (인)  |
| ※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·조회·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,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.  |

## ₩ 4. 202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신청서

- ☆ 융자신청서 작성안내문을 참고하여 빠짐없이 빈칸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.
- ☆ 선정발표 이후 선정내역은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| 신청일자*      |    | 신 청 인* |    |      |     |     | (인)  |
|------------|----|--------|----|------|-----|-----|------|
| 취급은행*      | 으해 |        | 기자 | 취급은행 | 해 당 | 지 점 | 전화번호 |
| 게 됩 근 101* | ₩  |        | 지점 | -    |     | -   |      |

### 1. 신청인 정보

| ①사업장명*            |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② 업체규모* | <ul><li>□ 대기업</li><li>□ 중견기업</li><li>□ 중소기업</li></ul> |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|----|
| ③ 법 인 명*<br>(신청인) |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④ 업체결산* | □ 예 ( · ·<br>□ 아니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월) |
| ⑤ 대표자명*           |        |   | ⑥사업자등록번호*<br>(생년월일) |        | ⑦법인등록번호 |   |    |
| ⑧ 사업장주소*          | (      | )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|   |    |
| ⑨ 법인주소*           | (      | )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|   |    |
| ⊕rl rl ∋l         | 성 명* : |   |                     | 이메일* : |         |   |    |
| ⑩담 당 자*           | 전화* :  |   |                     | 팩 스*:  |         |   |    |

\* 주소 및 우편번호, 이메일 등 신청인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(단위: 백만원)

| ① 업 체               | 현 황*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2년 실적 | 2023년 실적 | 2024년 계획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총                   | 아 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 )      | ( )      | ( )      |
| 매 출                 | 출 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 )      | ( )      | ( )      |
| 0.017] 7            | 영업비용 <sup>1)</sup>                | ( )      | ( )      | ( )      |
| 운영자금<br>신청업체만<br>작성 | 집기.비품.<br>차량운반구<br>(신청업체<br>만 작성)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
| 임 직                 | 원 (명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 )      | ( )      | ( )      |

- 주1) 영업비용은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의 합계액 기재
- 주2) 관광사업 이외의 타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, ( )안에 관광사업 부분의 금액을 표기하고, 구분 계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광사업의 비중(%)을 표기하시기 바람.

### 2. 신청내용

| 1          | 신청횟수* : □ 1회(처음 신청)   |         | 2~4회     |      | □ 5회 ( | 이상 |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--|----|----|
| 2          | 사업구분* : □ 건설          |         | 개보수      |      | □ 운영   |    |    |
| 3          | 특이사항* : □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 | 업자      | □ 관광특구 ﻟ | 내 소재 | (특구명   | :  |    |
| 4          | 신청업종* :               |         | (호텔업의    | 비 경우 | 등급 :   |    | 급) |
| <b>(5)</b> | 관광사업 등록번호 :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|    |
| <b>6</b>   | 관광기금 미상환잔액* : 정기융자 :  |         | 백만원 / 특별 | 명하 : |        | 백( | 만원 |
| 7          | 관광기금 신청금액* : 백단       | <u></u> | 출희망 :    | 월)   |        |    |    |

### 3.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\*

○ 운영자금 신청업체는 작성 제외

(단위 : 백만원)

|     | 7] [7]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'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년 상반기 신청 <sup>의</sup> | '25년 상반기 | 중). 기  |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|
| -   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 투자액<br>① | '24년 하반기<br>미지급액 <sup>3)</sup> | '25년 상반기<br>소요자금      | 계 ②      | 이후 소요액 | 합계<br>(①+②+③) |
| 소요  | 지원대상 @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|
| 자금  | 지원대상 외 <sup>4)</sup><br>⑤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|
| ((3 | 합계<br>(a)+(b) =<br>(d)+(e)+(f)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|
|     | 관광기금 ©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|
| 조달  | 관광기금 외<br>은행자금 d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|
| 계획  | 자기 자금 @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|
|     | 기타 자금 ①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|

주3) '24.1.1일 이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지급 중인 공사비('24년도 하반기 내 준공된 공사 제외)

주4) 시설자금의 경우 토지매입비(관광지·관광단지 조성사업 및 관광특구시행사업은 예외),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·부품 구입비용 등

#### 4. 담보계획

(단위: 백만원)

| 순번 | 담 보 물 건 | 담보가액 | 비고 |
|----|---------|------|----|
|    |         |      |    |
|    |         |      |    |
|    |         |      |    |
|    |         |      |    |

\* 반드시 거래하고자 하는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작성 바람.

### 5. 체크리스트\*

○ <u>운영자금 신청업체는 작성 제외</u> (단, 시설자금 신청업체 중 증축 및 개보수자금인 경우 신청자금이 15억원 미만인 업체 작성 제외)

| 구 분            | 항 목   | 신청인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자기자금           | 관광기금 선정금액이 신청금액의 <b>50% 미만으로</b> 배정될 경우,계획<br>사업 착수 가능여부          | <ul><li>□ 착수</li><li>□ 포기</li></ul>  |  |
| 조달 가능성         | 상기 항목에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착수될 경우, 계획사업 일정<br>지연여부 및 지연기간                  | □ 지연(월)<br>□ 지연안됨                    |  |
| 담보제공<br>능력     | 금번 신청금액에 상당하는 담보가액 관련, 담보제공 가능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><li>□ 가능</li><li>□ 불가능</li></ul> |  |
| 대출원리금<br>상환가능성 | 관광기금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해당사업 공사완료 후 발생<br>수익금 자료(예상 손익계산서 등) 제공 가능여부 | <ul><li>□ 가능</li><li>□ 불가능</li></ul> |  |
| 업종별<br>필요서류    | 융자신청서 및 업종별 필요서류 제출 여부  | <ul><li>□ 제출</li><li>□ 미제출</li></ul> |  |

#### 6. 참고사항

-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융자신청서 접수 시 업종별 필수 신청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.
- 융자신청서를 잘못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, 첨부된 '융자신청서 작성안내문'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- ㅇ 제출하신 융자신청서류 일체는 반환이 불가능합니다.

## 융자신청서 작성안내문

- ※ 융자신청서를 잘못 기재하여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주십시오.
  - 필수항목 : \*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작성
  - 용자신청 : 사업장(1-①), 사업구분(2-②), 신청업종(2-④)별로 별도 신청
  - 취급은행 : 융자지침에 표기된 관광기금 융자취급은행 참조
  - 은행의 관광기금 담당자 전화번호(운영자금의 경우 생략가능)
  - 은행, 지점명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대출업무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음

#### 1. 신청인 정보

- ① 관광기금을 실제 소요하는 공사현장 또는 운영업체 명칭
  - 사업자등록증이 발부된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체명으로 표기
- ② 해당되는 업체규모에 √ 표시
  - 대 기 업 :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
  - 중견기업 :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상의 중견기업
  - 중소기업 :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,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 및 문화 체육관광부가 인정하는 공공법인
- ③ 개인은 신청자명, 법인은 법인등록증상의 법인명, 법인이 아닌 사업체는 사업자 등록증상의 대표자명 기재
- ④ '예'로 표시한 업체는 결산서가 발행되는 월을 반드시 기재
- ⑤ 법인은 대표이사명을 기재(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 기재)
- ⑥ 개인은 대표자의 생년월일(주민등록번호 앞 6글자), 그 외는 세무서 발행 사업자 등록증의 번호 기재
- ⑦ 신청업체가 법인인 경우 반드시 기재
- (8) ①의 실 주소지
- ⑨ ③의 실 주소지, 융자관련 안내문을 배송할 주소지
- ⑩ 관광기금 대출업무를 관리하는 담당자정보 기재
- ⑪ 근사치라도 반드시 기재(임직원: 명. 그 외: 백만원)

#### 2. 신청내용

- ① 이번 신청을 포함한 관광기금을 신청한 횟수
- ②. ③ 해당 사항에 √ 표시
- ④ 아래 업종들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입, 호텔업은 신청 당시 호텔등급 기재

#### 지원대상 업종

- ▲종합여행업. ▲국내외여행업. ▲국내여행업. ▲관광식당업. ▲숙박업(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).
- ▲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, ▲ 관광펜션업, ▲ 한옥체험업, ▲ 야영장업, ▲ 기타유원시설업, ▲ 관광순환버스업,
  - ▲ 관광공연장업, ▲ 종합휴양업, ▲ 전문휴양업, ▲ 관광호텔업, ▲ 수상관광호텔업, ▲ 한국전통호텔업,
  - ▲ 기족호텔업, ▲ 호스텔업, ▲ 소형호텔업, ▲ 의료관광호텔업, ▲ 국제회의시설업, ▲ 국제회의기획업,
  - ▲ 외국인환자 유치업, ▲ 카지노업, ▲ 종합유원시설업, ▲ 일반유원시설업, ▲ 휴양콘도미니엄업,
- ▲ 관광유흥음식점업, ▲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, ▲ 관광궤도업, ▲ 미술관, ▲ 박물관, ▲ 공연장, ▲ 주차시설, ▲ 신고 숙박시설, ▲ 유스호스텔, ▲ 보세판매장, ▲ 사후면세점, ▲ 관광사진업, ▲ 관광유람선업,
- ▲ 마리나선박 대여업, ▲ 마리나선박 보관·계류업, ▲ 호텔리츠, ▲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, ▲ 자동차대여사업, ▲ 수상·수중레저사업, ▲ 관광객 유치형 축제·행사, ▲ 관광지원서비스업, ▲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
- ⑤ 관광사업 등록증(유원시설업 허가증,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등 포함) 사본 제출 업체인 경우 반드시 기입
- ⑥ 대출 중인 관광기금이 있으시다면 총 대출잔액을 기재(운영자금의 경우 정기 융자와 특별융자를 구분하여 기재)
- ⑦ 관광기금 대출 희망하는 월을 기재, 중복 가능

#### 3.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

- 소요자금은 '지원대상' 및 '지원대상외'로 구분하여 표기
- ① 시설자금
  - 지원대상 : 공사금액 중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, 구축물, 기계 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
    - '24. 7. 1일 이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지급 중인 공사비('24년도 하반기 내 준공된 공사 제외)
    - 객실 내 컴퓨터 설치, 도색, 벽지 및 카펫 교체비용
    - ·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·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의 토지매입비
  - 지원대상 외
    - ·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9조 제13호, 제19호부터 제23호까지, 제26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

- 기타 관광사업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
- 투지매입비
- ·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·비품 구입비용

#### ② 운영자금

- 작성 제외
- · '24년 하반기에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지급 중인 공사비를 신청하는 경우, 반드시 '24년 하반기 미지급액을 표기

#### 4. 담보계획

- 금융기관이 인정하는 각종 담보 취급 가능
- · 융자선정액은 최대 대출가능 금액이며, 기성고검사, 담보검사 등의 결과에 따라 실대출금액 산정
- 선정된 기금이 담보 등 은행과의 문제로 인해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사업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신청 전, 신청 후, 공사 중 은행과 긴밀히 협의 바람
- 담보물건은 계획시설, 부동산, 예금 등 담보 종류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, 담보 가액은 (예상)시가를 기재함

#### 5. 체크리스트

 체크리스트 미작성 또는 신청인 확인내용에 따라 융자선정액이 조정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5. 참고사항

- 。 결산서 작성 업체는 당해연도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(수정 및 경정・정정 신고 등 포함) 후 1개월 이내에 융자취급은행에 필히 제출
  - 단,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 (세무신고서류,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포함)을 1개월이내 제출
- 지침에 공지된 예산을 모두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.
  - 단, 융자신청기간 내에 융자취급은행에 융자금(시설자금은 기성고검사 완료)을 신청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자금사정으로 융자하지 못하면 다음 반기에 최우선 으로 융자
- 관광시설 확충자금 실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정해짐
  - 대출금액 =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

## ▶▶ 5. 2025년 상반기 관광기금 시설·운영자금 소요내역서

| 업체 명    | 한국호텔 | 대표자명  | 김한국 | (인) |
|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|-----|
| 사업자등록번호 |      | 연 락 처 |     |     |

| 상세내역                     | 소요액           | 비고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|--|
| * 시설자금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원  |  |
| 예) 관광시설 신축(증축, 개보수 등)    | 2,000,000,000 | 원  |  |
| 예) 시설장치, 토목공사 등          | 10,000,000    | 원  |  |
| 예) 공사자금 융자금 전환(상세히 작성)   | 300,000,000   | 원  |  |
| * 운영자금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원  |  |
| 예) 직원 급여, 사무실 임차료        | 10,000,000    | 원  |  |
| 예) 비품 구입(컴퓨터, 프린터, 책상 등) | 10,000,000    | 원  |  |
| 예) 홍보비(인터넷 광고료 등)        | 5,000,000     | 원  |  |
| 예) 영업용 차량 구입             | 4,000,000     | 원  |  |
| 예) 건물수선비(벽지 교체, 타일 수리 등) | 20,000,000    | 원  |  |
| 예) 운영자금 융자금 전환(상세히 작성)   | 500,000,000   | 원  |  |
| 총계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원  |  |

- ※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은 <u>2025년도에 필요한 금액에 한하여</u>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※ 필요한 금액을 초과 신청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을 시 회수대상이 됩니다.

## ▶ 6. 「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」 대출심사 사전확인서

### □ 이차보전 신청 기업

ㅇ 업 체 명 : *한국여행사* (사업자번호 : )

○ 소 재 지 :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-1

ㅇ 대 표 자 : *김한국* ㅇ 연락처 :

ㅇ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신청 예정액 및 대출심사 담보 확보 계획

| 융자 신청 금액         | 담보 확보 가능 예상           |  |  |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
| <i>2,000</i> 백만원 | 합계 : <i>2,500</i> 백만원 |  |  |  |

| 담보물     | 물건 소재지           | 소유자  | 시세가 등 금액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|
| (부동산 등) | (보증기관명 등)        | (관계) | (백만원)    |
| 부동산     |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-1 | 본인   | 1,500    |
| 보증서     |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   | ~    | 1,000    |
| 신용      | 신용 평점 800점       | -    | 50       |
|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

\_\_\_\_\_

### □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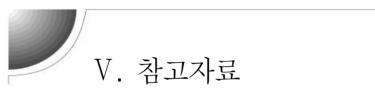
- 본 은행은 위 기업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신청계획에 대하여 사전 상담하였으며 대출심사가 가능한 기업임을 확인합니다.
- 본 확인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선정 승인 후 은행 대출승인을 보장 또는 확약하는 것은 아니며, 추후 대출심사 시 감액 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.

은행: *관광은행* 지점: *불광동지점* 

연락처: 02-000-0000 성명: *차장 이관광* (인)

20 . . .

##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귀하



## ▶ 1. 관광지, 관광단지, 관광특구 현황

## ○ 관광지 : 226개소

(2024. 11월 기준)

| 시.도 | 지정개소 | (2024. 11월 기군)<br>관 광 지 명   |
|-----|------|---|
| 부 산 | 5    | 기장도예촌, 용호씨사이드, 금련산 청소년수련원, 태종대, 해운대   |
| 인 천 | 2    | 마니산, 서포리  |
| 대구  | 2    | 비슬산, 회원   |
| 경 기 | 14   | 대성, 산장, 수동, 장흥, 용문산, 신륵사, 한탄강, 공릉, 임진각, 내리, 백운계곡, 산정호수, 소요산,<br>궁평  |
| 강 원 | 42   | 호반, 구곡폭포, 청평사, 간현, 옥계, 주문진, 연곡, 등명, 대관령 어흘리, 무릉계곡, 망상, 추암,<br>구문소, 속초해수욕장, 척산온천, 장호, 맹방, 삼척해수욕장, 초당, 팔봉산, 홍천온천, 어답산,<br>유현문화, 고씨동굴, 영월온천, 마차탄광문화촌, 미탄마하생태, 화암, 아우라지, 고석정, 직탕,<br>광덕계곡, 후곡약수터, 내설악 용대, 방동약수터, 스피디움, 송지호, 삼포 문암, 화진포, 오색,<br>지경, 통일전망대 생태안보교육 |
| 충 북 | 22   | 세계무술공원, 충온온천, 능암온천, 충주호체험, 교리, 능강, 금월봉, 계산, 제천온천, 만남의광장,<br>성내, 속리산레저, 구병산, 장계, 송호, 다리안, 수옥정, 괴강, 무극, 천동, 레인보우힐링, 온달  |
| 충 남 | 23   | 천안종합휴양, 태조산, 곰나루, 마곡사, 마곡온천, 공주문화, 대천해수욕장, 무창포해수욕장, 죽도,<br>아산온천, 간월도, 삽교호, 왜목마을, 난지도, 구드레, 서동요역사, 금강하구둑, 춘장대해수욕장,<br>칠갑산도립온천, 예당, 덕산온천, 만리포해수욕장, 안면도  |
| 전 북 | 21   | 석정온천, 금강호, 은파, 김제온천, 벽골제, 남원, 모항, 변산해수욕장, 위도, 모악산, 금마, 미륵사지,<br>왕궁보석테마, 웅포, 사선대, 오수의견, 방화동, 내장산리조트, 백제가요정읍사, 마이산회봉온천,<br>운일암반일암   |
| 전 남 | 27   | 대구면도요지, 곡성 도림사, 지리산온천, 니주호, 담양호, 회산연꽃방죽, 율포해수욕장, 한국차소리<br>문화공원, 불갑사, 성기동, 마한문화, 영산호 쌀문화 테마공원, 신지명사십리, 장성호, 홍길동<br>테마파크, 정남진우산도, 녹진, 아리랑마을, 해신장보고, 회동, 사포, 땅끝, 우수영, 도곡온천,<br>운주사, 화순온천, 대광해수욕장   |
| 경 북 | 33   | 경산온천, 고령부례, 문경온천, 문경상리, 오전약수, 다덕약수, 경천대, 문장대온천, 회상나루,<br>안동하회, 예안현, 고래불, 장사해수욕장, 선바위, 문수, 부석사, 영주순흥, 풍기온천, 치산, 포리,<br>예천삼강, 개척사, 울릉도, 백암온천, 성류굴, 의성탑산온천, 신화랑, 청도온천, 청도용암온천,<br>주왕산, 가산산성, 호미곶, 성주호  |
| 경 남 | 21   | 거가대교, 장목, 가조, 수승대, 당항포, 송정, 표충사, 실안, 금서, 전통한방휴양, 중산, 벽계,<br>오목내, 부곡온천, 마금산온천, 도남, 묵계, 농월정, 미숭산, 합천보조댐, 합천호  |
| 제 주 | 14   | 제주남원, 돈내코, 수망, 미천굴, 토산, 표선, 곽지, 제주상상나라탐라공화국 김녕해수욕장,<br>돌문화공원, 봉개휴양림, 용머리, 함덕 해안, 협재 해안  |
| 합 계 | 226  | 전체 관광지 면적 합계 : 120,610,252m²  |

### ○ 관광단지 : 52개소

(2024, 11월 기준) 명 칭 자치단체 지정면적(m) 사업시행자 단지지정 조성계획 위치 <u>부산</u> 기장군 오시리아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당사리 542 부산도시공시 '05.03. '22.12 3,662,486 인천 강화군 강화종합리조트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산281-1번지 일원 ㈜해강개발 652,369 12.07. '20.01 옹진군 덕적면 북리 산 187번지 일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수동 500 (2) 옹진군 선미테마아일랜드 666,417 24.09. 미수립 광주 광산구 어등산 2,736,219 광주광역시도시공사 '06.01. <sup>1</sup>19.12. 북구 강동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산35-2 1,367,240 울산 북구 '09.11. '20.04. 울산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산25-1번지 일원 (2) 울주군 울산 알프스 1.499.978 '24 03 미수립 ㈜송백개발 ㈜서해종합건설 안성시 안성 죽산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129 1.352.312 16.10. '22.10. 경기 (2)평택시 평택호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301-1 663,013 평택도시공사 '77.03 '20.02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474-2 델피노골프앤리조트 900.018 ㈜대명레저산업 12.05. '20.10. 고성군 고성 켄싱턴 설악밸리 (2)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471-60번지 일원 ㈜이랜드파크 849 114 '23 02 '23 02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설악한화리조트 속초시 장사동 24-1 속초시 1,332,578 10.08 21.06. 양양국제공항 양양군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496-4 2 730 219 15 12 '20 12 ㈜새서울레저 11,349,94 원주 오크밸리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1061 한솔개발㈜ '95.03. '23.03. 원주시 원주 더 네이처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산 121 1,444,086 경안개발㈜ 15 01 22.10 (3) 원주시 문막읍 비두리 산239-1 원주 루첸 2,644,254 ㈜지프러스 17.04. '22.04. 강원 (16)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산163, 홍천군 북방면 전치곡리 산1 라비에벸 4.843.796 ㈜코오롱글로벌 '09.09. 17.10. 춘천시 (2)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산 224 신영 ㈜신영종합개빌 110.02 20 12 1.695.993 휘닉스파크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1095-1 ㈜휘닉스중앙 4,233,039 '98.10. '18.12. 평창군 16,219,20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130 19.04. 평창 용평 ㈜용평리조트 '01 02 대관령 알펜시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425 강원도개발공사 '05.09. '06.04. 4,836,966 홍천군 서면 팔봉리 1290-14 홍천군 비발디파크 7,052,479 ㈜소노인터내셔널 '08.11. '22.09. 홍천군 서면 동막리 650번지 일원 미수립 (2) 홍천 샤인데일 2,421,331 '24.01. 웰리힐리파크 횡성군 둔내면 두원리 204 ㈜신안종합리조트 4,830,709 '05.06. '20 11 횡성군 (2) 드림마운틴 횡성군 서원면 석화리 산261-1 케이앤드씨 '16.03. '20.12. 1,796,574 경주시 보문로 446 보문 8.515.243 경북관광공사 75.04. '20.11. 경주시 경주시 감포읍 동해안로 1748 간포해양 1,804,215 경북관광공사 '93.12. 19.02. (4) 마우나오션 경주시 양남면 동남로 982 6,419,256 ㈜엠오디 '94.03. '20.12 북경주 웰니스 미수립 경북 경주시 안강읍 검단장골길 181-17 809,797 ㈜월성종합개발 '21.07. (7)김천시 김천 온천 김천시 부항면 부항로 1679-15 ㈜우촌개발 '05.01. 1,424,423 '96.03. 아동시 아동문하 안동시 관광단지로 346-69 경북관광공사 '03.12. '20.05. 1,655,181 웰빙-스테이 칠곡군 경북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산73-3번지 998,192 ㈜동화레져 '24.07. 24.07. 거제시 거제 남부 경남 거제시 남부면 탑포리 산 24-11 3,693,875 ㈜경동건설 <sup>1</sup>19.5. 미수립 경남 창원 구산해양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길 52-78 2,842,634 창원시장 11.04. '15.03. 창원시 창원시장, 경남개발공사 웅동복합레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898-1 2.101.234 12.02. 18.09 드래곤 전북 남원시 전북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131 신한레저주식회사 '20.06. 795,133 '18.09. 에이치제이매그놀리아 용평디오션호텔앤리조트 여수 화양 여수시 화양면 화양로 470-14 9,873,525 '03.10. 20.12 여수시 여수경도 해양 와이케이디벨롭먼트 '20.10. 여수시 대경도길 111 2,152,973 '09.12. (3) 전남 여수챌린지파크 전남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산333-2 510,424 여수챌린지파크관광(수) 19.05. 19.05. 진도군 의신면 송군길 31-28 진도군 진도 대명리조트 559,089 소노호텔앤리조트 '16.12. '19.11 해남군 화원면 한주광로 201 해남 오시아노 해남군 5,073,425 한국관광공사 '92.09. '21.11 증평군 증평 에듀팜 특구 충북 증평군 도안면 연촌리 산59-21 블렉스톤에듀팜리조트 ′1<u>7.12.</u> 충북 '20.08. 2,622,825 백제문화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74 15.01. 부여군 ㈜호텔롯데 '18.02. 3.024.905 천안시 골드**힐카운티리조트** 천안시 입장면 기로리 8-6번지 일원 ㈜버드우드 1.692.980 11112 '22 06 (3) 보령시 **원산도 대명리조트** 보령시 원산도리 산 219-2 966,748 ㈜소노인터내셔널 '22.11. '22.11. 중문 서귀포시 색달동 2864-36 3,200,925 한국관광공사 '71.01. '20.12 성산포해양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27-2 746,939 휘닉스중앙제주 '06.01. '20.10. 서귔포 신화역사공원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산35-7 3,985,601 |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'06.12. '21.01. (5) 제주헬스케어타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'19.10. 서귀포시 동홍동 2032 '09.12. 제주 1,539,339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600 록인제주 523,766 ㈜록인제주 '13.12. '22.12.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70-11 이랜드테마파크제주 18.05. 19.07. 587,726 제주시 프로젝트 ECO ㈜제주대동 제주 제주시 봉성리 산35 696,932 '18.05. '22.12. (3) 묘산봉 제주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5160-1 4,221,984 ㈜제이제이 한라 '20.01. '20.01. 52개 154,819,632

## ○ 관광특구 : 35개소

(2023. 10월 기준)

| 지역           | 특구명                | 지정 지역(소재지)   | 면적<br>(km²) | 최초자정일       |  |  |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|--|--|
| 서울(7)        | 명동남대문북창동<br>·다동무교동 | 명동, 회현동, 소공동, 무교동다동 각 일부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2000.03.30  |  |  |  |
|              | 이태원                | 용산구 이태원동한남동 일원   |             | 1997.09.29  |  |  |  |
|              | 동대문 패션타운           | 중구 광희동을지로5~7가신당1동 일원   | 0.58        | 2002.05.23  |  |  |  |
|              | 종로·청계              | 종로구 종로1가~6가서린동관철동관수동 예지동 일원, 창신동 일부<br>지역(광화문 빌딩~숭인동 4거리)        | 0.54        | 2006.03.30  |  |  |  |
|              | 잠실                 | 송파구 잠실동신천동석촌동송파동방이동  | 2.31        | 2012.03.15  |  |  |  |
|              | 강남마이스              | 기스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일대   |             | 2014.12.18  |  |  |  |
| -            | 홍대 문화예술            | 마포구 홍대 일대(서교동, 동고동, 합정동, 상수동 일원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13        | 2021.12.02. |  |  |  |
| нца          | 해운대                | 해운대구 우동중동송정동재송동 일원   | 6.23        | 1994.08.31  |  |  |  |
| 부산(2)        | 용두산.자갈치            | 중구 부평동광복동남파동 전역 중앙동동광동대청동보수동 일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08        | 2008.05.14  |  |  |  |
| 대구(1)        | 동성로                | 성내1·2·3동, 남산1·2동, 대봉1동, 삼덕동 일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16        | 2024.07.22  |  |  |  |
| 인천(1)        | 월미                 | 중구 신포동 연안동신흥동북성동 동인천동 일원   | 3.00        | 2001.06.26  |  |  |  |
| 대전(1)        | 유성                 | 유성구 봉명동구암동장대동궁동어은동도룡동  | 5.86        | 1994.08.31  |  |  |  |
|              | 동두천                | 동두천시 중앙동보산동소요동 일원  | 0.40        | 1997.01.18  |  |  |  |
|              | 평택시 송탄             | 평택시 서정동신장1.2동지산동·송북동 일원  | 0.49        | 1997.05.30  |  |  |  |
| 경기(5)        | 고양                 | 고양시 일산 서구, 동구 일부 지역  | 3.94        | 2015.08.06  |  |  |  |
|              | 수원 화성              |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, 장안구 일대  | 1.83        | 2016.01.15  |  |  |  |
|              | 통일동산               |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, 법흥리 일원  | 3.01        | 2019.4.30   |  |  |  |
| 71.01.5      | 설악                 | 속초사고성군 및 양양군 일부 지역   | 138.10      | 1994.08.31  |  |  |  |
| 강원(2)        | 대관령                | 강릉시·동해시·평창군·횡성군 일원   | 428.27      | 1997.01.18  |  |  |  |
|              | 수안보온천              |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라 안보리 일원  | 9.22        | 1997.01.18  |  |  |  |
| 충북(3)        | 속리산                |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라상판라중판라갈목리 일원   | 43.53       | 1997.01.18  |  |  |  |
|              | 단양                 | 단양군 단양읍.매포읍 일원(2개읍 5개리)  | 4.45        | 2005.12.30  |  |  |  |
| +11          | 아산시온천              | 아산시 음봉면 신수리 일원   | 3.71        | 1997.01.18  |  |  |  |
| 충남(2)        | 보령해수욕장             | 보령시 신흑동 응천읍 독산관당리 남포면 월전리 일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.52        | 1997.01.18  |  |  |  |
| TIH (a)      | 무주 구천동             | 무주군 설천면무풍면   | 7.61        | 1997.01.18  |  |  |  |
| 전북(2)        | 정읍 내장산             | 정읍시 내장지구용산지구   | 3.45        | 1997.01.18  |  |  |  |
| TILLO        | 구례                 | 구례군 토지면 마산면 광의면 산동면 일부   | 78.02       | 1997.01.18  |  |  |  |
| 전남(2)        | 목포                 | 북항:유달산:원도심:삼학도:갓바위:평화광장 일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.89        | 2007.09.28  |  |  |  |
|              | 경주시                | 경주 시내지구보문지구불국지구  | 32.65       | 1994.08.31  |  |  |  |
|              | 백암온천               | 울진군 온정면 소태리 일원   | 1.74        | 1997.01.18  |  |  |  |
| 경북(4)        | 문경                 | 문경시 문경읍가은읍마성면 농암면 일원   | 1.85        | 2010.01.18  |  |  |  |
|              | 포항 영일만             | 영일대해수욕장, 해안도로, 환호공원, 송도해수욕장,<br>송도송림, 운하관, 포항운하, 죽도시장, 시내 실개천 일대 | 2.41        | 2019.8.12   |  |  |  |
| 경남(2)        | 부곡온천               | 창녕군 부곡면 거문리시창리 일원  | 4.82        | 1997.01.18  |  |  |  |
|              | 미륵도                | 통영시 미수1.2동봉평동도남동산양읍 일원   | 32.90       | 1997.01.18  |  |  |  |
| 제주(1)        | 제주도                | 제주도 전역 (부속도서 제외)   | 1,809.56    | 1994.08.31  |  |  |  |
| 14개 시.도 35개소 |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|  |  |

# **▶** 2. 업종별 자금지원현황

| V) Z   | 건설자금  |        | 레마스라크 | 이어리크   |  |
|--|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--|
| 업종   | 신축·신설 | 중축. 증설 | 개보수자금 | 운영자금   |  |
| 종합여행업  | ×     | ×      | ×     | 0      |  |
| 국내외여행업   | ×     | ×      | ×     | 0      |  |
| 국내여행업  | ×     | ×      | ×     | 0      |  |
| 관광호텔업  | 0     | 0      | 0     | 0      |  |
| 수상관광호텔업  | 0     | 0      | 0     | 0      |  |
| 한국전통호텔업  | 0     | 0      | 0     | 0      |  |
| 가족호텔업  | 0     | 0      | 0     | 0      |  |
| 호스텔업   | 0     | 0      | 0     | 0      |  |
| 소형호텔업  | 0     | 0      | 0     | 0      |  |
| 의료관광호텔업  | 0     | 0      | 0     | 0      |  |
| 휴양콘도미니엄업   | ×     | ×      | 0     | 0      |  |
| 전문휴양업  | 0     | 0      | 0     | 0      |  |
| 종합휴양업  | 0     | 0      | 0     | 0      |  |
| 야영장업   | 0     | 0      | 0     | 0      |  |
| 관광공연장업   | 0     | 0      | 0     | 0      |  |
| 국제회의시설업  | 0     | 0      | 0     | 0      |  |
| 국제회의기획업  | ×     | ×      | ×     | 0      |  |
| 외국인환자 유치업  | ×     | ×      | ×     | 0      |  |
| 카지노업   | ×     | ×      | ×     | 0      |  |
| 종합유원시설업  | 0     | 0      | 0     | 0      |  |
| 일반유원시설업  | 0     | 0      | 0     | 0      |  |
| 기타유원시설업  | ×     | ×      | ×     | 0      |  |
| 관광유흥음식점업   | ×     | ×      | 0     | 0      |  |
|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 | ×     | ×      | 0     | 0      |  |
| 관광식당업  | 0     | 0      | 0     | 0      |  |
| 관광순환버스업  | ×     | 0      | 0     | 0      |  |
| 관광펜션업  | 0     | 0      | 0     | 0      |  |
| 관광궤도업  | ×     | Ö      | 0     | 0      |  |
| 한옥체험업  | ×     | Ö      | 0     | 0      |  |
| 숙박업(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)   | ×     | 0      | 0     | 0      |  |
|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| ×     | ×      | ×     | 0      |  |
| 보세판매장  | ×     | 0      | 0     | 0      |  |
| 사후면세점  | ×     | ×      | ×     | 0      |  |
| 관광사진업  | ×     | ×      | ×     | 0      |  |
| 관광유람선업   | 0     | 0      | 0     | 0      |  |
|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| ×     | 0      | 0     | 0      |  |
| 마리나선박 대여업  | ×     | 0      | 0     | 0      |  |
| 마리나선박 보관·계류업   | ×     | 0      | 0     | 0      |  |
| 호텔리츠   | 0     | ×      | ×     | ×      |  |
|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,   |       |        |       |        |  |
|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| 0     | 0      | 0     | ×      |  |
| 미술관, 박물관, 공연장, 주차시설<br>신고 숙박시설, 유스호스텔<br>- 관광지·관광단지·관광특구 내 소재 조건 | ×     | 0      | 0     | ×      |  |
| 자동차대여사업  | ×     | 0      | ×     | ×      |  |
| 수상·수중레저사업  | ×     | 0      | 0     | 0      |  |
| 관광객 유치형 축제 행사  | ×     | ×      | ×     | 0      |  |
| 관광지원서비스업   | ×     | 0      | ×     | 0      |  |
|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 | ×     | ×      | ×     | 0      |  |
| 기가보면서 비서 의표시킨  |       |        |       | $\cup$ |  |